

## 인도·태평양 수산위원회(IPFC)<sup>1)</sup>에 관한 연구\*

김 기 수\*\* · 장 영 수\*\*\*

A Study on the Indo-Pacific Fisheries Commission(IPFC)

Kim, Ki - Soo · Jang, Young-Soo

### ..... 目 次 .....

I. 문제의식	V. 향후 국제수산업의 전개방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II. 국제수산업동향 -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1. 향후 국제어업의 일반적 전개방향과 대응방안
III. 국제해양법하에서의 국제수산기구의 역할 강조	2. 향후 공해어업의 전개방향과 대응방안
1. 국제수산기구의 정의 및 종류	3. APFIC 및 기타 국제수산기구에서의 대응방안
2. 국제해양법과 국제수산기구의 관계	*. 부록
IV. APFIC 및 기타 중요 국제수산기구의 운영현황	참고문헌
1. APFIC	
2. 기타 중요 국제수산기구	

### I. 문제의식

오늘날 국제수산관계는 한마디로 “관리와 규제 · 금지”가 혼합된 국제규범의 多產시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 대두된 200해리경제수역의 개념 및 확장을 시작으로 이는 1994년 11월에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UNCLOS)으로서 명실상공 국제법으로 발효하게 되었다. 그외에 국제수산관계조약 및 협정으로는 1993년 11월의 FAO의 편의치적 선 금지협정(Agreements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 이 논문은 1995년 교육부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특별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연구임.

\*\* 무경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

\*\*\* 무경대학교 수산경영학과 전임강사

1) 인도·태평양수산위원회(Agreement for Establishment of the Indo-Pacific Fishery Commission : IPFC)는 1947년 FAO총회에서 설립 결의되어 1948년에 협정체결 발효되었다. 그러나 1993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 24차 총회에서同기구의 명칭을 지역설정에 맞게 아시아·태평양수산위원회(Asia-Pacific Fishery Commission : APFIC)로 변경하였다.

## 수산경영론집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by Fishing Vessel on the High Seas), 1995년 8월 4일 자로 채택된 유엔공해어족보존관리협정(UN Agreements on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1995년 10월 31일 이태리 로마에서 개최된 제28차 FAO 총회에서 채택된 FAO의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The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은 국제해양법을 보완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실질적으로 연안국들로 하여금 광대한 관할수역을 보장받게 하였으며 동수역내외에 출현하는 경계왕래 및 고도회유성 어족자원에 대해서도 우선적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일련의 국제관계규범들의 탄생은 종전의 200해리경제수역 내에서의 자유로운 조업은 물론이고 해양법에 명시된 본원적 의미의 「공해자유의 원칙」을 더 이상 존재치 않게 하였으며, 결국 종래의 공해어업국들은 관리된 공해어업이라는 사태를 현실로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세계유수의 원양어업국이며 공해어업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상기와 같은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의 동향에 예외일 수가 없으므로 해서 종래의 공해자유의 원칙에 입각한 외연적 어장확대를 배경으로 한 양적성장은 더 이상 불가능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이 국제적인 어업규제속에서도 고급수산물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해양법」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국제해양질서체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오늘날 이러한 국제해양질서의 多產과 함께 주목되고 있는 것이 국제수산기구이다. 국제수산기구라 하더라도 UN산하기구로서의 국제기구와 UN과는 무관한 국제기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UN의 전문기구인 FAO(United Natio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산하에 두고 있는 국제수산기구 대부분의 설립동기는 세계수산업의 개발과 이를 통한 국가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200해리경제수역을 대표로 하는 신해양질서에서의 관리와 규제와는 직접적으로 깊은 관련성은 가지고 있지 않고 조직 운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UN을 중심으로하는 국제수산기구와는 무관한 특정 국가들의 수산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조직 설립된 지역 수산기구의 역할과 성격에 대해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론에서 언급하겠지만 전자에 해당하는 예가 FAO산하의 IPFC(이하에서는 주에서 밝힌 바와 같이 APFIC로 표기하기로 한다) 등이고 후자에 해당하는 예가 남태평양국가들의 조직기구인 FFA(Forum Fisheries Agency)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①왜 근년에 있어 국제수산기구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고, 그리고 ②다양한 국제수산기구의 역할과 의의를 통해 이러한 국제수산기구를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③과연 우리나라는 어떠한 국제수산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를 참여 동기와 의미라는 시각에서 고찰하고자 함을 기본적인 문제의식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기본 시각에 접근함에 있어 문제제기를 선명히 하기 위해서 인도양과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수산위원회(APFIC) 조직과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나 이는 국제수산기구에 대한 포괄적인 고찰의 연장선에서 접근하기로 한다.

## 인도·태평양 수산위원회(IPFC)에 관한 연구

### Ⅱ. 국제수산업동향

####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세계의 어업을 해역별로 살펴보면 태평양수역은 815,393백톤(1993년)으로 세계총어획고의 약 63.6%를 차지하고 있고, 대서양수역이 233,909백톤으로 약 27.8%, 인도양이 72,891백톤으로 약 8.6%를 차지하고 있어 태평양수역이 세계수산의 중심 해역임을 잘 알 수 있다(표1). 그러나 사실상 태평양수역에서 북태평양은 명태의 주 어장으로 대부분의 수역을 미국과 러시아의 200해리로 설정되어 타국의 조업이 규제되고 있는 실정이며, 남서태평양수역은 가다랭이·다랑어의 주 어장으로 남태평양 도서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200해리수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연안국이 「소유」하는 영해내 자원이나 다름이 없다. 그 외에도 오징어의 주 어장인 남동태평양은 페루와 칠레의 200해리가 설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명태와 오징어 등 경계왕래어족에 대한 규제와 가다랭이·다랑어 등의 고도회유성에 관한 규제로 공해에 있어 상업성이 있는 대상어종 조업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제 북태평양에 있어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베링공해에서의 조업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러시아는 연안국으로서 공해어장의 어획량 급증이 자국의 200해리내 자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1992년 8월 제5회 관계국 회의에서 1993년·1994년 베링공해의 자주적 휴어를 합의 결정하였다. 그리고 1994년 2월에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0회 회의에서는 「중앙베링공해의 명태자원의 보존 관리에 관한 국제조약<sup>2)</sup>」를 체결하여 총어획량·국별 할당량을 조약국의 공동합의에 의해 결정하고 공

<표1> 세계어업의 해역별 생산

(단위 : 백톤, %)

해 역 별	연 도	1 9 8 7	1 9 9 0	1 9 9 3
태 평 양		495,434 (60.7)	529,396 (64.0)	535,692 (63.6)
대 서 양		265,572 (32.6)	235,517 (28.4)	233,909 (27.8)
인 도 양		54,387 ( 6.7)	62,988 ( 7.6)	72,891 ( 8.6)
계		815,393 (100)	826,901 (100)	842,492 (100)

자료 : FAO, Yearbook of fisheries statistics 1993.

- 2) 본 조약은 본문 20조와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나 핵심적인 내용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미국·러시아 200해리수역을 포함한 알류산해역 전체의 명태자원량에 대한 과학기술위원회의 평가를 기초로 베링공해의 총허용어획량(TAC)·국별 할당량은 원칙적으로 전조약국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조치를 취한다. 알류산해역의 명태자원량이 167만톤미만인 경우는 TAC는 제로(0), 167만톤에서 200만톤 사이인 경우 TAC는 13만톤, 200만톤에서 250만톤인 경우 TAC는 19만톤, 250만톤이상인 경우는 낸차 회의에서 별도로 설정한다. ③ 보존관리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옵저브의 승선. ④ 과학조사에 대한 협력과 과학데이터의 교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해어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財)東京水產振興會,これから公海漁業について, 1992.3을 참조 바람.

## 수산경영론집

동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조업을 금하는 잠정조치를 합의하였다. 이러한 공해조업에 대한 국제규제를 배경으로 베링공해에서의 조업은 <표2>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주요 공해조업국인 한국, 일본, 폴란드, 중국 등의 1992년 각국의 어획량은 제로(0)에 가까운 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경우 아시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획고는 총원양어획고의 약 82.2%가 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총출어 어선의 약 60%가 이 지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대서양이나 인도양에 비해 태평양에서는 상업적 가치가 높은 가다랭이·다랑어를 참치선망, 참치독항에 의해 주로 어획되고 있으며, 오징어채낚기에 의한 오징어조업, 북양트롤에 의한 명태조업이 대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장이다. 그 외에도 일반트롤에 의해 대구, 둠류, 가오리, 민어, 삼치, 전갱이, 갈치 등 다양한 어종이 어획되고 있어 우리나라 원양어업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어장이다. 또한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수산물의 총수출액 1,646,884천 달러 중 93%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총수입액 726,267천달러 중 56%가 이 지역 국가와 이루어지고 있어 이 지역을 둘러싼 수산업 관련동향은 향후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경영환경은 물론 전체 수산물 공급구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최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어업동향은 200해리경제수역의 확대나 공해조업의 규제

<표2> 베링공해에 있어 국별 어획량

(단위 : 천톤)

	한국	일본	폴란드	중국	러시아	미국	합계
1988	269	750	299	18	61	0	1,397
1989	342	655	269	31	151	0	1,448
1990	244	417	223	28	5	1	918
1991	78	140	55	17	4	0	293
1992	4	3	0	3	0	0	10

주 : 小野征一郎, “公海漁場の現状と課題”, 1994.9, 漁業經濟研究, p.5에서 인용.

자료 : 일본 수산청 자료로부터 작성.

<표3>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해역별 어업별 어획량(1994)

(단위 : 톤, %)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참치기지	3,258	563	2,281
참치독항	37,052	1,242	12,653
참치선망	195,014	-	-
오징어채낚기	81,665	64,190	-
북양트롤	304,446	-	-
일반트롤	71,114	64,696	10,103
새우트롤	-	750	363
기타	36,535	1,273	-
합계(100)	729,084(82.2)	132,714(15.0)	25,400(2.8)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1994로부터 작성.

인도·태평양 수산위원회(IPFC)에 관한 연구

<표 4> 우리나라 아시아 태평양지역 수산물 수출입 대비(1994)

(단위 : 천 \$, %)

구 분	수 출	수 입
계	1,646,884 (100)	726,267 (100)
아·태지역국가	1,526,949 ( 93)	408,674 ( 56)
기타 국가	119,935 ( 7)	317,593 ( 44)

자료 : 수산청

이외에도 새로운 국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주된 국제수산의 논의 대상이 자원에서 환경, 교역 등에 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움직임을 이 지역의 수산관련 국제협의체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산하 수산실무그룹회의(Fisheries Working Group : FWG)의 연차회의의 주요 의제들을 검토해 보면 쉽게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 5월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APEC 제 7차 수산실무그룹회의<sup>3)</sup>의 주요 의제는 역내 수산자원 관리에 대한 APEC의 역할 제고, 역내 수산물의 교역 및 투자자유화, 역내 수산제품의 기준 조화(위생 및 검역제도의 개선), 바다거북탈출장치(Turtle Exclude Device : TED) 및 독극물 사용업(Cyanide Fishing) 등과 같은 환경보호를 위한 선택적 어구 및 어법의 도입 등이었다.

① 역내 수산자원 관리에 대한 APEC의 역할 제고와 관련하여서는 이 분야의 선진국인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수산자원의 보존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는 TAC(최대허용 어획량) 및 ITQ(개별 할당제)제도 등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몇몇 국가를 제외한 다수 국가가 이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 해서 수년내로 이 제도가 보편화될 전망으로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철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② 다음으로 역내 수산물의 교역 및 투자자유화와 관련해서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카나다 등은 수산물의 교역 및 투자자유화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각국 수산관련 정보의 교류 확대, 활선어를 포함한 주요제품의 시장조사의 협조, 비관세장벽의 조사 등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은 그 필요성을 공감하나 이행과정에 있어 각국의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 등이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교역자유화라는 APEC 설립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조만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Action Program)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③ 역내 수산제품의 기준 조화(위생 및 검역제도의 개선)와 관련해서는 역내 국가 모두가 수산물의 교역 확대로 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름에 따라 역내 국가 간 공동의 위생 및 검역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미국은 식품검사에 있어서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위해분석 중요관리점)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다수 국가들이 이에 찬동함으로써 수년내에 이 제도가 역내 국가에 의무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이 지역 국가들에게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HACCP와 관련한 제반 기반시설, 인력 육성

3) 동회의는 1996. 5. 28~6. 2까지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APEC 회원국 16개국과 FAO가 옵저버로 참가했으며, 본 논문의 저자도 정부 대표로 참가한 바 있음.

및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연차적으로 실시범위 사업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sup>4)</sup>.

④ 마지막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여러 선택적 어구 및 어법의 도입검토와 관련해서는 바다거북탈출장치(TED)와 청산가리염어업(Cyanide Fishing)등이 의제로 다루어졌다. 그 중 전자와 관련해서는 미국,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역내 자원보호 선진국들과 태국을 비롯한 아세안국가 및 한국, 일본, 중국 등의 입장이 확연히 달라 많은 논쟁이 있었다. 특히 태국을 비롯한 아세안국가들은 바다거북이 와 같은 야생동물보호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 어구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새우수입금지조치를 실시한 것은 APEC의 교역자유화 정신과 정면배치되는 부당한 조치임을 들어 이에 강력반발하였다. 하지만 미국 및 선진국대표들의 발언으로 미루어 보건대 향후 이같은 환경관련 규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보건대 향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국제수산업동향은 수산자원의 이용보다는 보존 및 관리가 보다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며, 환경관련 제반규제가 보다 확대될 전망으로 있다. 향후 우리나라가 이 지역의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움직임에 적극대처하며, 이와 관련한 국제규범 및 제도를 정비하고 국제적인 수산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를 쏟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 III. 국제해양법하에서의 국제수산기구의 역할 강조

#### 1. 국제수산기구의 정의 및 종류

1970년대 후반부터 각국의 200해리경제수역 선포로 실질적인 신해양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으나 실질 주요 국제수산기구는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각국의 200해리경제수역의 설정 및 확대 이후 국제수산기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국제기구란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 우선 개괄하기로 한다<sup>5)</sup>.

오늘날 국제기구라고 불리우는 실체는 상당히 다양하게 인식되고 있다. 우선 광의의 의미로서는 UN과 같은 정부간의 국제기구 이외에도 적십자국제위원회(ICRC) 등의 민간국제협력단체(NGO : 비정부간국제기구), 국제결제은행(BIS)와 같은 국제공동기업도 국제기구안에 포함할 수 있으며, 심지어 다국적기업 등도 국제기구로서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광의의 의미로서가 아닌 협의의 의미로 인식되는 국제기구는 일반적으로 정부간의 국제기구(inter-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를 말한다. 왜냐하면, 국가간 국제기구야 말로 국가가 조약을 체결하여 만들어낸 국제적인 독립단체로서 전통적인 국제사회의 구조에 기본적인 변혁을 요구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가 충족시킬 수 없는 국제적 공적목적을 국가간의 공통 기구를 통해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국제기구를 협의의 의미로서 정의하면 「국제기구란 복수국

4) HACCP에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육영수·김성채(1995)를 참조할 것.

5) 국제기구의 정의에 관해서는 橫田洋三編著『國際機構論』, 1992.5, 國際書院을 참조하면서 인용 서술하고 있다.

## 인도 · 태평양 수산위원회(IPFC)에 관한 연구

가에 의해 공통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제조약에 직접 기인하여 설립된 상설적 기구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국제기구가 정의된다면 국제수산기구는 「복수국가가 수산과 직접 관련된 공통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간의 조약에 직접 기인하여 설립된 상설적 기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국제수산기구를 주된 관련 해역별로 살펴보면 <표5>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표5> 해역별 주요 국제수산기구

해 면 어 업 기 구			
태 평 양	대 서 양	인 도 양	기 타
남태평양상임위원회 (SPPC)	국제해양조사위원회 (ICEC)	인도양수산위원회 (IOFC)	FAO수산위원회 (COFI)
남태평양수산위원회 (FFA)	남서대서양수산자문위원회 (CARPAS)	인도태평양수산위원회 (IPFC → APFIC)	국제포경위원회 (IWC)
북태평양물개위원회 (NPFSC)	대서양다량어보존위원회 (ICCAT)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CCAMLR)
북태평양수산위원회 (INPFC)	동구수산위원회 (JFC)		동카리브국기구 (OECS)
전미열대다량어위원회 (IATTC)	발탁해수산위원회 (IBSFC)		라틴아메리카수산발전기구 (OLDEPESCA)
태평양넙치위원회 (IPHC)	북대서양연어보존기구 (NASCO)		아태지역 양식기구 (NACA)
태평양연어어업위원회 (PSC)	북동대서양수산위원회 (NEAFC)		아태지역 수산시장정보기구 (INFOFISH)
남태평양위원회 (SPC)	북서대서양수산기구 (NAFO)		
	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 (CECAF)		
	중서대서양수산위원회 (WECAFC)		
	지중해수산이사회 (GFCM)		

### 내 수 면 어 업 기 구

라틴아메리카 내수면어업위원회(COPESCAL)

아프리카 내수면어업위원회(CIFA)

유럽 내수면어업자문위원회(EIFAC)

주 : ① 상기에 명시된 국제수산기구 이외에도 지역수산기구 등이 다수 설립 조직되어 있다.

② 상기 기구의 영문명은 부록에 수록하고 있음.

자료 : 수산청, 「漁業協定集」, 1992으로부터 작성.

국제수산기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각각의 국제수산기구는 설립목적이나 대상수역, 대상어종, 기능 등에 차이는 있으나 수산과 직접관련된 공통의 목적달성을 위해 설립된 상설적 기구이다. <표 5>에서 나타내고 있는 국제수산기구의 성격을 ① 남태평양상임위원회(SPPC), 남태평양수산위원회(FFA), 북태평양수산위원회(INPFC),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북동대서양수산위원회(NEAFC), 인도양수산위원회(IOFC), 인도태평양수산위원회(IPFC→APFIC : 아시아태평양수산위원회) 등 대상수역의 관리를 전제로 설립 조직된 기구, ② 북태평양물개위원회(NPFSC), 전미열대다량어위원회(IATTC), 태평양넙치위원회(IPHC), 태평양연어어업위원회(PSC), 대서양다량어보존위원회(ICCAT), 북대서양연어보존기구(NASCO) 등 대상수역에 있어 특정 어종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 조직된 기구, ③ 남태평양수산위원회(FFA)와 같이 연안국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구와 아시아태평양수산위원회(APFIC)와 같이 연안국과 원양국(어업국)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기구, ④ 그외 FAO수산위원회(COFI), 국제포경위원회(IWC) 등 전 해역을 대상으로 하거나 동카리브국기구(OECS), 라틴아메리카수산발전기구(OLDEPESCA), 아태지역수산시장정보기구(INFOFISH), 라틴아메리카 내수면어업위원회(COPESCAL), 아프리카 내수면어업위원회(CIFA), 유럽 내수면어업자문위원회(EIFAC) 등과 같이 해역보다는 특정 지역의 수산관련문제를 취급하는 기구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에 자세한 서술은 후술하기로 한다.

## 2. 국제행양법과 국제수산기구의 관계

새로운 국제수산질서로서 정착된 국제해양법에서는 금후 새로운 국제수산기구의 설립은 물론이고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국제수산기구에 있어서 변화하고 있는 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수산기구에 있어 수산과 직접 관련된 공통의 목적달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국제수산기구는 어떠한 역할과 기능이 요구되고 있는지를 국제행양법에 명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국제해양법 제61조 ‘생물자원의 보존’

① 제2항 - 연안국은 자국이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를 고려하여, 남획으로 인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생물자원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존·관리조치를 통하여 보장한다. 적절한 경우, 연안국과 권위있는 소지역적·지역적 또는 지구적 국제기구는 이를 위하여 협력한다.

② 제5항 - 이용가능한 과학적 정보, 어획량과 어업활동 통계 및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그밖의 자료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그 국민의 입장에 허용된 국가를 포함한 모든 관련국의 참여아래 적절히 권한있는 소지역적·지역적 또는 지구적 국제기구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교환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국제해양법에서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해 연안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제수산기구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의 국제수산기구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 (2) 국제해양법 제63조 ‘2개국 이상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걸쳐 출현하거나 배타적경제수역

#### 과 그 바깥의 인접수역에 걸쳐 출현하는 어족'

① 제1항 -동일어족이나 이와 연관된 어종의 어족이 2개국 이상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걸쳐 출현하는 경우, 이러한 연안국들은 이 부의 다른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직접 또는 적절한 소지역기구나 지역기구를 통하여 이러한 어족의 보존과 개발을 조정하고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2항 -동일어족 또는 이와 연관된 어종의 어족이 배타적경제수역과 그 바깥의 인접수역에 걸쳐 출현하는 경우, 연안국과 인접수역에서 이러한 어족을 어획하는 국가는 직접 또는 적절한 소지역기구나 지역기구 통하여 인접수역에서 이러한 어족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여기에서는 Straddling Fish Stocks 즉 경계왕래어족에 관한 정의를 2가지 의미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 국제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후자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그 바깥의 인접수역에 걸쳐 출현하는 수산자원이다. 이러한 수산자원의 취급문제는 북동태평양의 베링공해를 중심으로 표면화되어 왔으며 북서태평양의 캐나다근해, 중동태평양의 맥시코근해, 남동태평양의 칠레근해, 남서대서양의 아르헨티나근해 등의 해역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주된 어종은 명태, 둠, 오징어 등으로 이러한 어족자원에 대해서 국제행양법에서는 이상과 같은 조항을 두면서 자원의 관리나 이용에 대해 국제수산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3) 국제해양법 제64조 '고도회유성어족'

① 제1항 -연안국과 제1부속도서에 열거된 고도회유성어종을 어획하는 국민이 있는 그 밖의 국가는 배타적경제수역과 그 바깥의 인접수역에서 그러한 어종의 보존을 보장하고 최적이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협력한다. 적절한 국제기구가 없는 지역에서는 연안국과 같은 수역에서 이러한 어종을 어획하는 국민이 있는 그 밖의 국가는 이러한 기구를 설립하고 그 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즉, 광역의 해역을 회유하는 다행어 · 가다랭이를 대표격으로 하는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과 이용에 대해서는 그 관리를 연안국과 어업국의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만약 국제기구가 없을 경우에는 양자가 참여한 형태의 국제기구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 (4) 국제해양법 제65조 '해양포유동물'

① 제65조에서는 이 부의 어떠한 규정도, 적절한 경우, 이 부에 규정된 것보다 더 엄격하게 해양포유동물의 포획을 금지 · 제한 또는 규제할 수 있는 연안국의 권리나 국제기구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각국은 해양포유동물의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며, 특히 고래류의 경우 그 보존 · 관리 및 연구를 위하여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노력한다.

#### (5) 국제해양법 제66조 '소하성어종'

① 제5항 -소하성어족의 기원국과 이를 어획하는 그 밖의 국가는 이 조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

여 적절한 경우 지역기구를 통하여 약정을 체결한다.

(6) 국제해양법 제2절 공해생물자원의 관리 및 보존

① 제118조 ‘생물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가간 협력’

모든 국가는 공해수역에서 생물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동일한 생물자원이나 동일수역에서 다른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국민이 있는 모든 국가는 관련 생물자원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교섭을 시작한다. 이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 그 국가는 소지역 또는 지역어업기구를 설립하는데 서로 협력한다.

(7) 유엔 공해어족보존관리 협정

1995년 7월 25일 ~ 8월 4일 경계왕래어류자원 및 고도회유성 어류자원에 관한 제6차 유엔회의에서 채택된 ‘경계왕래어류자원 및 고도회유성어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1982년 12월 10일 유엔 해양법협약 관련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특히 참치와 같은 고도회유성어류자원의 경우, 관련 연안국 및 자국민이 동 자원을 해당 지역에서 어획하는 타국은, 국가 관할수역 내외의 전지역에 걸쳐 이러한 자원의 보존을 확보하고 최적이용의 목표를 증진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제3장 ‘경제왕래어류자원 및 고도회유성어류자원에 관한 국제협력체제’에 규정된 적절한 협력체제를 통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3장 ‘경제왕래어류자원 및 고도회유성어류자원에 관한 국제협력체제’에서는 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협력, 소지역적, 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및 약정, 소지역적, 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및 약정의 기능, 신규 회원국 또는 참가국, 소지역적, 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및 약정의 활동의 투명성, 기존의 기구 및 약정의 강화, 정보의 수집 제공과 과학조사협력 등에 관한 협정을 명시하고 있다.

③ 제4장 ‘비회원국 및 비참가국’에서 국제협력체제인 국제기구의 비회원국 및 비참가국의 해당 자원에 대한 보존관리조치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국제해양법에서 국제수산기구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하는 일련의 국제관계 움직임은 적절한 지역어업관리기관에 가맹하지 않고, 또한 그 보존관리조치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 자국의 어선에 의한 조업조건 준수 확보에 노력하지 않거나 위반조업선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무책임한 국가에 대해서는 공해조업을 포함한 국제수산업에의 수행 자격이 없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어, 앞으로 책임있는 어업국으로의 역할 대응이 필요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 IV. APFIC 및 기타 중요 국제수산기구의 운영현황

이미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근년에 있어 국제수산의 움직임은 관리와 규제·금지가 혼합된 국제 규범의 多產으로 집약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관리와 규제·금지를 실질적으로 수행 담당하게 되는 것이 국제수산기구일 것이다. 따라서 기존부터 조직되어 있어 온 국제수산기구는 새로운 기능과 역할

## 인도 · 태평양 수산위원회(IPFC)에 관한 연구

이 요구될 것이며, 해역별 · 어종별로 국제수산기구가 조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국제사회로부터 설립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국제수산기구에 대해 살펴봄에 있어 특히 주목할 점은 국제수산기구의 성격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수산기구를 다양한 측면에서 그 성격을 구분할 수 있으나 앞으로 중요시되는 구분 시각은 첫째로 연안국들만으로 조직되어 원양국(어업국)은 배제된 국제수산기구 내지는 지역수산기구인지, 둘째로 연안국과 원양국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여 조직된 기구인지를 대별하는 것이다<sup>6)</sup>. 이러한 성격 구분은 주요 원양어업국이자 공해조업국인 우리나라를 앞으로의 신해양시대 즉 200해리경제수역의 세계적 정착 시대 이후 국제어업에서 중요하게 부각될 공해어장의 이용방법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UN해양법 조약하에서의 자원관리체제는 기본적으로 EEZ와 공해를 별개의 관리체계하에 두고 있다. 다시 말해 200해리 경제수역내의 자원관리는 연안자국이 관할하게 되는 것이며, 여기에서의 원양국 조업은 양국간의 협정 체결에 기인한 입어료 지불이나 합작 방식이 아니면 실질 조업이 불가능하다. 한편, 원래 공해어장의 관리는 旗國主義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공해어장에서의 조업 역시도 경계왕래어족이나 고도회유성어족 등의 국제적 관리 · 규제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남은 공해어장이나마 원양어업국이 이용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산기구에의 적극적인 참여는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하에서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국제수산기구도 그 기능을 200해리수역의 외측 공해수역만을 관리대상으로 할 수 밖에는 없는 실정이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주요 국제수산기구의 대상 해역을 세계 지도 위에 나타내면 <그림1>과 같다. 이러한 국제수산기구를 몇 가지 측면에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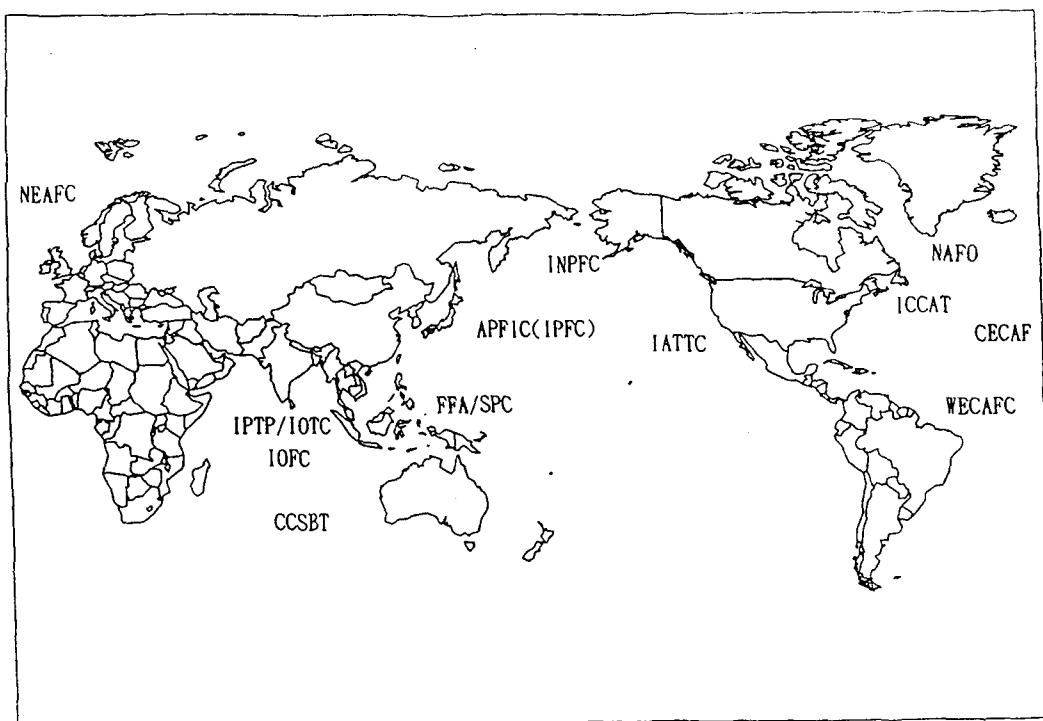
### ① 관리 대상 수역에 따른 구분

관리 대상 수역에 따른 구분은 <그림1>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태평양의 일부 내지는 전부를 관리 대상 수역으로 하는 국제수산기구로는 FFA, INPFC, IATTC, APFIC 등이 있으며, 대서양의 일부 내지는 전부를 관리 대상 수역으로 하는 국제수산기구로는 ICCAT, NEAFC, NAFO, CECAF, WECAFC 등이다. 또한 인도양의 일부 내지는 전부를 관리 대상 수역으로 하는 국제수산기구로는 IOFC, IPTP, IOTC, APFIC 등이 존재하고 있다.

### ② 관리 대상 어종에 따른 구분

모든 국제수산기구가 대상 해역의 전어종 내지는 다수의 상업성이 있는 어종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IATTC, FFA, ICCAT, IPTP, IOTC, CCSBT 등은 대상해역에서 가다랭이 · 다향어 관리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기구이다. 그리고 <그림1>에서는 나타내지 않은 IPHC(태평양넙치위원회), PSC(태평양연어어업위원회), NASCO(북대서양연어보존기구) 등도 여기에 해당하는 국제수산기구라 할 수 있다. 반면 APFIC, IOFC, INPFC, NEAFC, CECAF, NAFO, WECAFC 등은 대상 해역에서의 전어종 내지는 다수의 상업성이 있는 어종의 관리를 목적으로 조직된 기구이다.

6) 小野征一郎은 공해어장의 이용 형태를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연안국과 어업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EEZ내외어장, 공해어장을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형태, 둘째로는 연안국주도형의 관리조직, 세째로는 상업포경의 금지와 같은 환경보호라는 관점에서의 공해어장의 모라트리움으로 구분하고 있다. 小野征一郎, 1994년



<그림 1> 주요 국제수산기구의 대상 해역도

주 : 국제수산기구의 명칭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조 바람.

### ③ 구성국의 성격에 따른 구분

국제수산기구를 관리 대상 수역이나 관리 대상 어종에 따른 구분위에 이를 구성하고 있는 참여국의 성격, 다시 말해 연안국만으로 구성된 경우와 비교적 연안국과 함께 원양국(어업국)도 함께 참여하여 운영 관리되고 있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기구가 FFA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후술하기로 하나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및 남태평양도서국들이 중심이 되어 회원국간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면서 가입 자격을 SPF(South Pacific Forum, 남태평양포럼)가맹국 내지는 SPF가 추천하고 SPF의 승인을 얻은 역내 국가 내지는 부속령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원양국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원양국의 가입 참여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입의 문호가 배타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IATTC로 가입 자격을 가맹국의 만장일치의 합의로 하고 있어 원양국의 자유로운 가입이 제한되고 있다.

한편, 후자에 해당하는 국제수산기구의 대표적인 예가 APFIC, IOFC, IOTC, CECAF, WECAFC, ICCAT 등이 있으며, 이들 기구는 FAO결의기구로 FAO가맹국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NAFO의 경우도 북서대서양의 어장 이용을 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구성국의 성격에 따른 구분, 즉 연안국과 함께 원양국(어업국)도 함께 참여하여 운영 관

## 인도 · 태평양 수산위원회(IPFC)에 관한 연구

리되고 있는 본 논문의 주된 대상인 APFIC를 비롯하여 ICCAT와 연안국만으로 구성된 FFA를 중심으로 국제수산기구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개괄하기로 한다.

### 1. APFIC (Asia-Pacific Fisheries Commission) : 아시아 · 태평양 수산위원회

1) 설립 : 1948년 FAO현장 제14조에 의거한 국제조약으로 설립되었으며 FAO산하 최초의 국제수산기구이다. 본부는 태국 방콕에 있으며 1994. 11. 21 제107차 FAO이사회에서 명칭변경을 승인하였다.(IPFC→APFIC)

2) 수역 : 조약국의 내수면 및 인도양 태평양수역

3) 어종 : 모든 수산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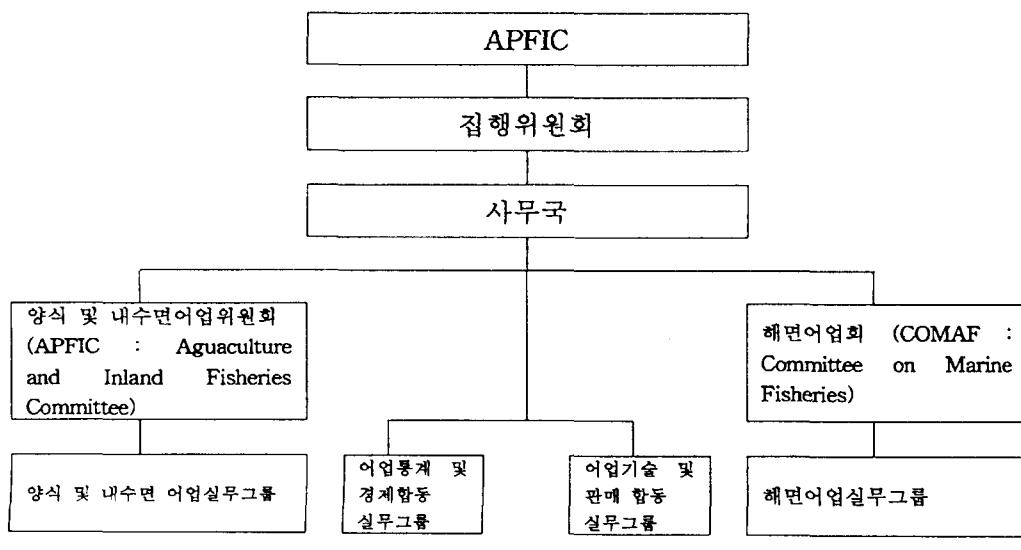
4) 기능

#### ① 조직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APFIC의 조직은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사무국은 양식 및 내수면어업위원회와 해면어업위원회라는 2개의 위원회로 구성된다. 각 위원회에는 산하에 실무그룹회의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별도로 어업통계 및 경제관련 합동실무그룹과 어업기술 및 판매합동실무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 ② 중요기능

- ④ 수산자원의 개발 이용 문제와 관련한 해양학적, 생물학적 및 기술적 측면의 방향 제시
- ⑤ 수산자원의 공동조사의 계획 수립 및 조정
- ⑥ 수산업관련 제반정보수집 및 교류
- ⑦ 수산자원 조사기술 등의 표준화 및 관련설비취득의 원조
- ⑧ 가맹국 내지는 FAO로부터의 위탁사항의 심의 및 권고활동



<그림 2> APFIC 조직도

5) 가입자격 : FAO가맹국에는 개방되어 있으나 UN가맹국에는 2/3다수의 합의가 요구된다.

6) 가입국 : 한국, 호주,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미얀마,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캄보디아, 말레이지아, 네팔,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프랑스, 영국, 미국(20개국)

7) 재정에 있어 현장활동비용은 FAO정규예산으로 충당되어 회원국의 연구 및 개발사업은 각 회원국의 경비로 시행된다.

#### 8) 주요활동상황

④ FAO지역총회의 권고에 따라 동위원회는 양식사업연구, 수산자원개발 및 수산분야 관련기관과의 정보교환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⑤ 내수면 어업개발을 위한 작업안회의,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심포지움 개최, 소규모연안영세어업개발을 위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 9) 우리나라의 주요 활동 상황

우리나라는 1950년 1월에 동위원회에 가입한 후 1962년 10월 제10차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sup>7)</sup>.

동총회에서는 17개 회원국과 남태평양수산위원회(SPC)를 포함한 6개 국제기구가 참가하여 책임있는 수산업의 환경적 측면에 관한 심포지움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수산관리에 있어서 APFIC의 향후 역할 등을 주제로 한 본회의로 진행되었다. 동총회의 심포지움은 ① 수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에 대한 관심 촉구, ②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환경문제 검토, ③ 지속적 수산업의 지원을 위해 환경영향을 관리하는 방안 검토, ④ 환경관리의 향상을 위한 권고의 개발을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APFIC는 동심포지움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회원국 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바 있다.

① 관련 국제 협정에 가입 및 국내법령의 조화 권고

②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 이행 권고

③ 육상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전세계 프로그램에 참여 권고

④ 개별국가의 모니터링, 관리 및 감시를 위한 규정 향상 권고

⑤ 지역 당국의 책임 하에 어업 및 양식업이 통합관리되도록 권고

⑥ 수산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자원상태, 서식지 상태, 어촌사회복지 사항에 대한 이행지표를 점검 권고

동총회의 본회의는 동심포지움의 결과보고, APFIC의 활동경과 및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논의,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의 어업과 양식업의 문제와 전망, 역내어업관리를 위한 APFIC의 미래 역할 및 APFIC 헌정과 의사규칙 개정 등을 의제로 진행되었다.

본회의 결과 APFIC가 세계어업생산량의 50.9% 그리고 세계양식업생산량의 90.0%를 점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을 관할하는 기구로서 독자적인 활동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을 공감하였고, 협정 및 의사규칙의 일부를 개정하였고 향후 계속적으로 이를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산 관리에 있어 APFIC의 향후 역할의 강화방안으로 수산자원의 합리적 관리 및 지속적 개발과 관련한 최근의 국제적 조치 및 협정에 대한 APFIC의 우선조치분야를 다음과 같이 선정한 바 있다.

7) 동총회는 1996. 10. 15 ~ 24에 개최되었으며, 본 논문의 필자들은 우리나라 정부대표의 자문교수로 참가한 바 있

## 인도·태평양 수산위원회(IPFC)에 관한 연구

- ① 수산정보 및 통계의 수집·배포 및 교환
- ② 내수면 어업 및 양식업의 지속적 개발
- ③ 어류자원평가 및 생산동향
- ④ 어류서식지에 해가 없고 부수어획 및 폐기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구 및 어법개발
- ⑤ 경계왕래어족의 관리·감시체계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협력프로그램개발
- ⑥ 수산제품 품질 보장 향상 및 수산물 교역정책의 조화

이상의 25차 APFIC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회의개최국으로서 심포지움 및 본회의 주요의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수산부문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와 동지역의 국제수산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다고 사료된다.

## 2. 기타 중요 국제수산기구<sup>8)</sup>

(1) ICCAT(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 대서양다랑어류 보존국제위원회, FAO결의기구

- ① 설립 : 1969년 ICCAT조약에 근거하여 설립
- ② 수역 : 대서양전수역
- ③ 어종 : 다랑어류 및 다향어어선에 어획되는 타어종
- ④ 기능
  - ⑤ 다랑어류의 자원상태에 관한 통계정보 수집, 분석
  - ⑥ 다랑어류 자원을 MSY준준에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정보 연구, 평가
  - ⑦ 연구, 조사의 권고
  - ⑧ 조사결과, 통계, 생물학적 테이터의 간행, 보급
  - ⑨ 다랑어류 자원을 MSY에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고
- ⑤ 가입자격 : UN 및 UN전문기관의 가맹국
- ⑥ 가입국 : 한국, 일본, 브라질, 카나다, 미국,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프랑스, 포르투칼, 스페인, 러시아, 앙골라, 베냉, 카메룬, 가봉, 가나, 코트디브아르, 모로코, 상토메프린세페, 세네갈, 남아공, 화국, 적도기네(22개국)
- ⑦ 조직
  - ⑧ 위원회, 이사회와 재정행정 및 조사통계의 2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어종별 4개 Panel을 운영하고 있다.
  - ⑨ 위원회는 각 회원국에서 파견된 3명 이내의 대표로 구성
  - ⑩ 이사회는 위원회에서 2년 임기로 선출하는 의장, 2명의 부의장 및 8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 ⑪ 상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무총장은 위원회에서 임명한다.

8) 이하에서의 주요 국제수산기구에 관한 내용은 주로 수산청, 「漁業協定集」, 1992(한국)과 國際漁業研究會, "世界の漁業管理", (財)海外漁業協力財團, 1994.12(일본)을 참조하고 있다.

【설립경과 및 주요 활동내용】

- 1) 1966년 5월 FAO가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한 전권대표자회의에서 채택된 대서양다랑어류 보존을 위한 국제조약의 초안의 작성 및 서명을 한 것이 시초이다. 이 조약은 7개국의 비준을 끝낸 1969에 발효되고 조약에 의거하여 ICCAT가 설립되었다.
- 2) ICCAT의 자원관리 목적은 생물학적으로 최대로 지속할 수 있는 생산량을 높이는 수준으로 자원을 지키는 것이다.
- 3) 이를 위해 ICCAT의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2년에 한 번 실제는 매년 연차회의를 열고 있다. 위원회 중에는 과학통계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Research and Statistics - SCRS)가 있어 조사 연구의 책임을지고 있다.
- 4) SCRS는 자원 평가에 기초로 해서 혹시 자원상태가 나쁘고, 어업규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로 생각되는 규제조치를 위원회에 권고한다.
- 5) 채택된 규제조치는 위원회 가맹국의 정부에 대해 권고라는 형태로 각국에 전달되고 6개월의 권고에 대한 항의 유예기간이 지난 단계에서 발효한다.
- 6) 규제위반과 실시상태는 위원회 내부의 정별 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 7) 지금까지 실시된 규제조치는 기본적으로 ① 사이즈 제한과 ② 어획노력량 삭감 조치 그리고 어획 할당량의 설정이다. 예를 들면, 황다랑어와 눈다랑어의 사이즈 제한은 3.2Kg 이하의 어획은 금지한다던지, 참다랑어는 6.4Kg 이하의 어획 내지는 소유를 금지하는 등이다.
- 8) 이상과 같은 규제조치는 원칙뿐이지 그 실행은 각국에 맡겨져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참다랑어의 규제를 위해 일본은 어획량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철수제한을 실행하고 있고 산란기의 지중해에서는 1975년 이후 연승선의 금어를 행하고 있다. 또한 쿼터에 도달하였을 때는 조업정지라고 하는 수단도 취하고 있다. 미국은 참다랑어의 할당을 보다 세분화하여 각 어업으로 나누고 각각 세밀한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어, 예를 들면 황새치연승에서의 참다랑어 흔획은 각선의 1항해에 관해서는 한 마리에 한정하고 있다.

(2) FFA(Forum Fisheries Agency) : 포럼어업기관

일명 : South Pacific Forum Fisheries Agency(남태평양 수산위원회)

- ① 설립 : 1979년 포럼어업기관 설립협정에 근거하여 설립(SPF의 산하기관)
- ② 수역 : 남태평양(중서부태평양)
- ③ 어종 : 모든 수산자원(특히 다랑어어종)
- ④ 기능
  - ⓐ 고도회유성어종을 포함한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통계상, 생물학상의 자료 수집, 분석, 홍보
  - ⓑ 지역 및 역외 제국에 의해 체결된 협정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홍보
  - ⓒ 수산물, 수산제품의 가격, 운송 가공, 마케팅의 정보 수집, 홍보
  - ⓓ 어업정책, 교섭에 관한 기술적 조언, 정보, 원조 내지는 허가증 발급, 요금의 짐계에 관한 원조,

## 인도 · 태평양 수산위원회(IPFC)에 관한 연구

### 감시 단속에 관련한 사항의 원조 제공

④ 관계지역기구, 국제기관, SPC(South Pacific Commission, 남태평양위원회)와의 작업조정

⑤ 위원회가 결정하는 타기능

⑥ 가입자격 : SPF(South Pacific Forum, 남태평양포럼) 가맹국 내지는 포럼어업위원회가 추천하고 SPF의 승인을 얻은 역내 국가 내지는 부속령

⑦ 가입국 : 오스트레일리아, 쿡제도, 피지, 키리바시, 나울, 뉴질랜드, 니우에, PNG, 솔로몬, 퉁가, 서사모아, 투바루, 미크로네시아연방, 바누아투, 파라오, 마샬제도(16개국)

⑧ 조직

SPF의 수산위원회, 회원국 분담금으로 운영

### 【설립경과 및 주요 활동내용】

1) 남태평양(중서부태평양)의 다랑어어장은 전세계 다랑어류 총생산량 약450만톤전후 중 SPC수역에서의 다랑어류 생산량은 약120만톤전후이고,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수역을 포함한 중서부태평양에서의 다랑어류 생산량은 약150만톤전후로 대단히 중요한 어장이라고 할 수 있다.

2)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태평양 도서국의 독립이 본격화되어 감과 동시에 옛종주국으로부터의 원조가 급속히 축소되어 새로운 재원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70년대 후반 200해리 문제 가 대두되면서 남태평양 도서국은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언하고 연안 200해리내의 고도회유성어종을 포함하는 생물자원에 대해 연안국의 주권을 지지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 속에서 1979년에 가다랭이 다랑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역외교섭을 남태평양 도서국에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FFA를 창립하게 되는 것이다. 당초 FFA는 지역어업 협력기관으로 자원국수주의를 내세웠고 가맹국 전체의 200해리수역내의 생물자원, 특히 가다랭이 · 다랑어 등 고도회유성어종의 합리적인 개발과 최적이용을 꾀하기 위해 원양어업국에 대해 개별국의 접근을 지양하고 공동접근을 하여 갈 것을 의도하여, FFA가맹국 전원이 참가하는 다국간 어업협정안을 만들었다. 현재 미국과 FFA간의 다국간어업협정이 체결(1987년 4월 조인, 1988년 6월에 발효)되어 있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국정부와 FFA간의 경제개발기금설립에 관한 것으로 협정 성립후 5년간에 걸쳐 매년 1,000만달러를 FFA구좌에 넣어 줄 것을 약속하였다.

② 미국정부와 FFA가맹국간의 다국간어업협정으로 첫해는 최저 35척의 조업에 대해 175만달러의 일괄 입어료와 25만달러의 기술협력비를 지불. 35척을 넘어서는 배의 조업에 대해 최저 10척까지 1척당 6만달러의 입어료를 추가 지불하기로 하였다.

3) SPC가 실제로 표식방류나 자원조사에 근거한 기술적인 정보를 수집 · 분석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FFA는 실질 입어조건이 되고 있는 어선등록 및 보고의무에 근거한 어업 유형별 · 수역별 어획 노력당 어획자료의 수집 · 분석을 행하고 있다.

4) 연안국과 입어국간의 어업조정

① 입어하는 어선은 전부 어선등록을 한다.

- ② 외국어선보다는 가맹국어선의 허가신청을 우선한다.
- ③ 외국어선의 허가에 가맹국이 통일조건(허가증의 보유유지, 조업일지의 제시, 입어국부담에 의한 어획통보 및 옵저버 승선 의무, 어가어선의 식별 방법의 통일 등)을 정한다.
- ④ 동일원칙에 기초해 산출된 입어료를 요구한다.
- ⑤ 외국어선의 공동감시·감독을 한다.
- ⑥ 실제 2국간의 교섭장에 FFA임원이 옵저버로 참석하여 가맹국이 어업교섭을 유리하게 진행 하게끔 하는 역할도 한다.

5) 입어선에 대한 감시·감독체계

- ① 순시선(PPB, Pacific Patrol Boat) 15척을 운용하고 있다.
- ② 항공 사찰도 실시(FFA가맹국 중 9개국이 호주와 뉴질랜드의 협력을 얻어 실시)

6) 어업협정에 의한 감시·감독

- ① 입어통일조건(1990년)과 외국어선의 지역등록제도(1992년)하에서 조업
- ② FFA가맹국수역에서 海上轉載의 제한
- ③ 동수역 및 공해에서의 어획 및 어획노력량 등의 어획자료의 제출
- ④ 동수역 내에서의 옵저버 승선
- ⑤ 통과통행시의 어구의 격납 의무
- ⑥ 旗國정부 혹은 관계어업단체의 책임 의무(Flag State Responsibility)

7) FFA가맹국들의 새로운 규제 움직임

- ① 가칭 「서태평양 선망어업관리협정」을 채택(1993년 5월), 협정 발효 수속이 진행
- ② 이 협정의 중요 내용은 년간 국가별 조업척수를 정하는 것이다.  
(대략 205척으로 결정, 1992년 현재 서태평양수역에서는 200척의 선망선이 조업 중이고 한국은 36척이 진출하고 있음)
- ③ 척수 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 地先선망선
  - ⓑ 외국선이라도 地先을 기준으로 하여 조업하는 선망선(합병선 등)
  - ⓒ FFA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나라
  - ⓓ 실적이 있는 나라이고, 어획보고, 입어등록 등을 행하고 있는 선망선(한국은 여기에 해당하고 있음)

## V. 향후 국제수산업의 전개방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 1. 향후 국제어업의 일반적 전개방향과 대응방안

1982년 UNCLOS에 의해 연안국들은 광대한 관할수역(경제수역)을 보장받게 되었으며, 그밖에 관

## 인도 · 태평양 수산위원회(IPFC)에 관한 연구

할수역内外에 공히 출현하는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sup>9)</sup> 어족자원에 대해서도 관리의 우선적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하지만 UNCLOS는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관리에 관한 연안국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안국들의 집요한 노력으로 1993년 FAO의 편의치적선금지 협정, 1995년 UN공해 어족보존관리협정, 1995년 FAO의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등이 잇달아 나오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수산관련 주요 국제협약 및 협정 등의 발효 및 제정 등으로 말미암아 향후 국제어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본다.

- ① EEZ의 정착과 연안국의 조업규제 강화
- ② 경계왕래어류자원 및 고도회유성 어류자원에 대한 연안국과 어업국의 대립 심화
- ③ 편의치적선에 대한 규제 강화
- ④ 환경보호와 관련한 각종규제 강화

따라서, 향후 어업국은 적절한 지역어업관리기관에 가입하지 않고 또한 그 보존관리조치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나, 자국어선에 의한 조업조건 준수 확보에 노력하지 않거나 위반조업선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무책임한 국가는 공해조업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축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리고, 금후 각 지역에 있어서 지역어업관리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있어서는 지역 및 국제기구가 설립될 전망이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수역에 있어서는 연안국과 자원보호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역기구의 역할을 개정하는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현재와 같은 원양어업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역어업관리기구에 참여하여 국제어업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또 나아가서 원양어업으로부터의 수익일부를 세계어업질서형성에 재투자하며 책임있는 어업국으로서 의무(국제어업협정준수 등)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2. 향후 공해어업의 전개방향과 대응방안

UN의 「신해양법」이 새로운 해양질서로 확립되면서 공해어장을 둘러싼 연안국과 어업국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비록 95년 UN공해어족협정체결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도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관리문제를 두고 양당사자간의 의견대립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전망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해어장 이용형태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10)</sup>. 제1형태는 연안국과 어업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해의 생물자원을 국제기관에서 EEZ내외를 불문하고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가 베링공해의 「명태보존관리조약」이다. 그밖에 ICCAT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남방다량어보존위원회(CCSBT)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제2형태는 연안국주도형의 관리조직이다. 이는 해양법취지와는 다른 형태로서 원양어업을 갖고 있지 않은 개도국들과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일부 선진국이 강력히 주장하는 형태이다. 이 형태

9) 1994. 12월까지 세계 총 143개의 연안국 중 영해 및 경제 수역을 선포한 국가는 108개이며,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도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한 바 있다.

10) 小野征一郎(1994)를 참조

의 대표적 사례가 FFA이며, 그밖에 IATTC해역의 동태평양다량어 어업기구 및 서인도양다량어기관(WIOTO) 등이 있다.

제3형태는 해양환경보호라는 관점에서 공해어장에 모라토리움(Moratorium : 일시적조업중지)을 선언하고 생물자원의 이용을 금지시키는 형태이다. 상업포경의 모라토리움 그 대표적 예이고 91년 UN총회결의에 의해 93년부터 모라토리움에 들어간 공해 대규모 유자망어업이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세가지 형태의 공해어업 중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공해자원관리에 대해 연안국과 어업국의 대등한 입장을 견지하는 제1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해자원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공해에 있어서도 배타적경제수역(EEZ)내의 조치와 정합성을 도모 하자는 다수연안국(아르헨티나, 칠레,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태평양제국)들의 국제적 영향력이 점증하고 있으므로 해서 우리나라도 일본, EC, 중국, 폴란드 등과 같은 원양어업국과의 보다 긴밀한 연대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어업의 중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제3형태의 공해어업이 확산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앞서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우트롤업에 있어서 바다거북탈출장치(TED)를 부착하지 않은 아세아국가로부터의 새우수입을 금지시킨 미국의 일방적 조치를 미루어 볼 때, 향후 우리나라도 선택적 어구사용 및 옵저버승선, 레이다설치 등에 의한 모니터링을 강화 및 유효한 단속조치실시 등을 통한 공해어업의 투명성 및 책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공해어업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 3. APFIC 및 기타 국제수산기구에서의 대응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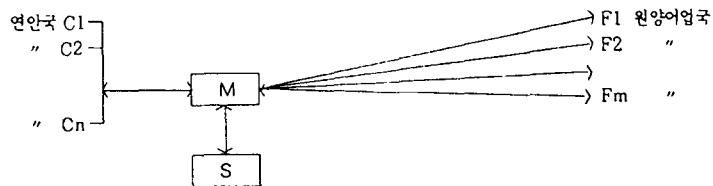
APFIC 역시 중요 국제수산기구이므로 APFIC에서의 우리나라의 역할제고 방안은 국제수산기구에서의 일반적 대응방안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APFIC을 위시한 국제수산기구에의 적극 가입 및 역할 분담은 앞으로의 우리나라 수산업에 있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하지만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국제수산기구의 성격 구분에 있어 연안국들에 의해 조직 관리되고 있는 지역기구는 자원국수주의를 배경으로 한 수산자원의 경제제로서의 이용 논리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기구에의 우리나라 가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FFA와 같이 다국간어업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는 그 진입장벽이 더욱더 높아 원양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언젠가는 미국과 같이 FFA와 다국간어업협정을 맺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지역수산기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 <그림3>과 같은 대체안이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1)</sup>. 여기에서는 Saito가 제시한 주요 어업관리기구 형태를 중심으로 케이스별로 분류하고 이것이 시사하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 ① 케이스 1 : 연안국만으로 구성된 수산기구에 의한 어업관리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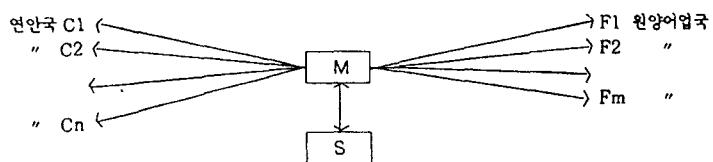
11)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체안은 1992년 11월 멕시코에서 열린 태평양경제협력회의의 어업소위원회에서 일본측으로부터 제출된 제안서에서 인용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Saito(1992)를 참조 바람.

인도·태평양 수산위원회(IPFC)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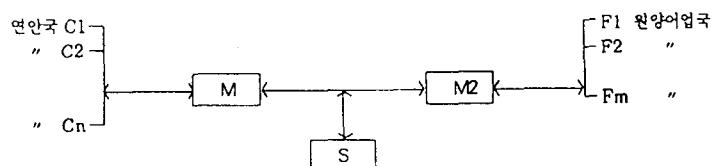
① 케이스 1 : 연안국만으로 구성된 수산기구에 의한 어업관리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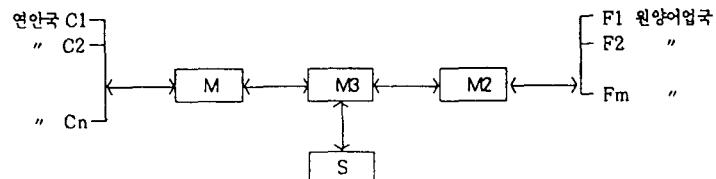
② 케이스 2 : 중립적인 국제수산기관에 의한 어업관리 형태



③ 케이스 3 : 대표제에 의한 2차원적 어업관리 형태



④ 케이스 4 : 케이스 2와 케이스 3의 결합 형태



<그림 3> 국제수산기구의 대체 모델

주 : Cn 연안국, Fm 원양국, M 어업관리기구, S 과학위원회  
자료 : Saito(1992)에서 인용.

이 경우 수산관련기구 M은 연안국들 Cn으로만 구성되는 수산기구로 M은 Cn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성격을 띠면서 원양국 Fm의 참여를 불허하고 있다. 한편, 과학위원회 S도 연안국만으로 조직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연안국과 원양국 쌍방이 출자하여 조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이 경우는 어업관리 방식이나 입어허용 범위 등의 정책결정에서 원양국은 배제되고 개별국 단위로 대응하기 때문에 힘이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② 케이스 2 : 중립적인 국제수산기관에 의한 어업관리 형태

이 경우 수산관련기구 M은 연안국 Cn과 원양국 Fm이 대등한 입장에서 설립 조직하는 것으로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 상호합의에 근거하여 행해지기 때문에 국제해양법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

③ 케이스 3 : 대표제에 의한 2차원적 어업관리 형태

이 경우 수산관련기구 M은 연안국 Cn에 의해 조직된 기구에 대해 원양국 Fm들은 M2를 조직하여 대응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때 과학위원회 S는 연안국과 원양국이 쌍방 출현하여 조직하여 독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앞의 케이스 1에 대한 원양국의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실제 문제 발생시 중재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 큰 과제로 남게 된다.

④ 케이스 4 : 케이스 2와 케이스 3의 결합 형태

이 경우 수산관련기구 M3는 M과 M2의 중재역할을 수행하는 연립수산기구로서의 성격을 지니면서 과학위원회 S도 M3 산하에 두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형태 이외에도 다양한 가정을 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케이스 2와 같은 어업관리 국제수산기구에의 적극적인 가입 참여는 물론이고 케이스 1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 방안으로 케이스 3 케이스 4와 같이 원양국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국제수산기구의 재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 V.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UN해양법협약 발효이후의 향후 국제수산업은 종래의 원양어업국주도에서 연안국주도로 이행되고 있다. 공해자원에 대하여서도 종래의 무주물선점의 원칙이 배제되고 국제적인 인류공유재산(해양법 제136조)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원양어업국들이 적당한 지역어업관리기관에 가입하여 책임있는 어업국으로의 역할을 태만히 할 것<sup>29</sup>. 그 시역어업은 물론 공해어장에서도 축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당장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것 같지는 않지만 공해어업을 둘러싸고 연안국과 어업국들의 입장에 많은 차이가 있어서 연안국의 입장이 보다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미루어 볼 때, 빠른 시일안에 우리의 눈앞에 닥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과거와 같은 공해조업의 자유는 더 이상 향유할 수 없으며 관리된 공해어업이라는 대원칙에 순응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의 주먹구구식인 자원관리방법에서 진일보된 보다 체계적이고

## 인도 · 태평양 수산위원회(IPFC)에 관한 연구

종합적인 자원관리정책의 도입이 요구된다. 물론 여기에는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적절한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하여 유효한 단속을 통하여 어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국제어업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지원금 또는 원양어업수익금의 일부를 개도국의 어업지원 또는 국제어업질서형성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결맞는 책임있는 어업국으로서의 응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구환경문제와 연계된 해양생태계의 보존문제가 국제수산업의 중요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해양포유동물의 흔획문제해결을 위한 선택적 어구의 사용 및 환경친화적 어구어업의 개발 및 실용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적 투자가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 【부록】

1. 남태평양 상임위원회(SPPC:South Pacific Permanent Commission)
2. 남태평양 수산위원회(FFA:South Pacific Forum Fisheries Agency)
3. 북태평양 물개위원회(NPFC:North Pacific Fur Seal Commission)
4. 북태평양 수산위원회(INPFC:International 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5. 전미 열대다랑어위원회(IATTC: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6. 태평양 넘치위원회(IPHC:International Pacific Halibut Commission)
7. 태평양 연어위원회(PSC:Pacific Salmon Commission)
8. 국제해양탐사협의회(ICES: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
9. 남대서양 수산자문위원회(CARPAS:Regional Fisheries Advisory Commission for the Southwest Atlantic)
10. 대서양 참치보존위원회(ICCAT: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11. 동구수산위원회(JFC:Joint Fishery Commission)
12. 발틱해 수산위원회(IBSFC:International Baltic Sea Fishery Commission)
13. 북대서양연어보존기구(NASCO:North Atlantic Salmon Conservation Organization)
14. 북동대서양 수산위원회(NEAFC:North-East Atlantic Fisheries Commission)
15. 북대서양 수산기구(NAFO:Northwest Atlantic Fisheries Organization)
16. 중동대서양 수산위원회(CECAF : Fishery Committee for the Eastern Central Atlantic)
17. 중서대서양 수산위원회(WECAFC:Western Central Atlantic Fishery Commission)
18. 지중해 수산위원회(GFCM : General Fisheries Council for the Mediterranean)
19. 인도양 수산위원회(IOFC:Indian Ocean Fishery Commission)
20. 인도태평양 수산위원회(IPFC:Indo-Pacific Fishery Commission)
21. FAO 수산위원회(COFI:Committee on Fisheries)
22. 국제포경위원회(IWC: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23. 남극해양 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24. 동カリ브국 기구(OECS:Organization of Eastern Caribbean States)
25. 라틴아메리카 수산개발기구(OLDEPESCA:Latin American Organization for the Development of Fisheries)
26. 아태지역 양식센터기구(NACA:Network of Aquaculture Centres in Asia the Pacific)

## 수산경영론집

27. 아태지역 수산물시장 정보기구(INFOFISH:Marketing Information and Technical Advisory Services for Fishery Product in the Asia and Pacific Region)
28. 라틴아메리카 내수면어업위원회(COPESCAL:Commission for Inland Fisheries of Latin America)
29. 아프리카 내수면어업위원회(CIFA:Committee for Inland Fisheries of Africa)
30. 유럽 내수면어업자문위원회(EIFAC:European Inland Fisheries Advisory Commission)

## 참 고 문 헌

1. 김기수, 「APEC 제 7차 수산실무그룹회의(FWG) 참가보고서」, 1996. 6.
2. 김민종, “해양경제영역 확장과 수입자유화가 한국의 참치어업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경제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6.
3. 박성채, “도전받고 있는 한국원양어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1.
4. 부산수산대학교, “한반도 주변수역의 수산업 현황과 전망방안”, '94 수산과학심포지움 Proceeding, 1994.
5. 부산수산대학교, “WTO체제하의 수산업 발전방향”, 수산기업연구소 주관 수산정책심포지움보고서, 1994. 5.
6. 小野征一郎(李承來譯), “漁場利用體制의 國際的動向”, 漁政研究포럼 총서 제3호, 漁政研究포럼, 1995.
7. 수산청, 「FAO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체택 및 대책」, 1995. 10.
8. 수산청, 「남태평양 참치조업에 관한 다자간 고위급회담 결과보고서」, 1994.
9. 수산청, 「제 1차 북태평양 참치류 잠정과학위원회(ISC) 참석보고서」, 1996. 5. 10. 수산청, 「한일어업관계사 자료집」, 1996. 3. 11. 수산청, 「어업협정집」, 1992. 12. 옥영수, 김성채, “WTO체제하의 수산물수입검사 및 검역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324, 1995. 12. 13. 한국원양어업협회, 「1995년도 주요 업무보고서」, 1995. 14. 한국원양어업협회, 「원양어업통계」, 제 17집, 1995. 6. 15. 한국원양어업협회, 「원양 어업」, 772~791호, 1996. 1. ~ 10. 16. 장영수외, アジア漁業の發展と日本, 農文協, 1995. 5. 17. 장영수외, “東アジア關係國の漁業事情”, (財)海外漁業協力財團, 1994. 9. 18. 國際漁業研究會, 「世界漁業管理」(上.下), (財)海外漁業協力財團, 1994. 12. 19. FAO, 「Report of the Ad hoc Consultation on the Role of Regional Fisheries in Relation to High Seas Fishery Statistics」, FAO Fisheries Report No. 500, 1994. 20. FAO, 「Review of the State of World Fishery Resources : Marine Fisheries」, FAO Fisheries Circular No. 884, 1995. 21. FAO, 「Yearbook of Fisheries Statistics」, 1993. 22. Saito, T, “Coastal State - Distant Water State Relation Focusing on Management of Central Western Pacific Tuna, Discussion paper presented at the sixth work - shop of the task force on fisheries development and cooperation”,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Mexico City, 24 - 25 February, 1992, p 15

인도 · 태평양 수산위원회(IPFC)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do-Pacific Fisheries Commission(IPFC)

Kim, Ki - Soo · Jang, Young-Soo

### Abstract

The paper tries to review the structure,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International Fisheries Bodies including the Indo-Pacific Fisheries Commission(IPFC), which was changed to Asia-Pacific Fisheries Commission(APFIC) by the amendments of the Agreement on 1993. In addition to this review, it tries to find out the current issues of international fisheries in the Asia-Pacific area. It also tries to find ways and means for our country to manage such kind of international fisheries issues in that area.

Finally, it tries to propose ways how our country strengthen its activities in International Fisheries Bodies and impact on establishment of internationl fisheries policies.